

전주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18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183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단74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 선고 2020. 11. 19.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가단74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재성

판사김범준

판사이슬아